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1. 4.23 현재, 세전)

구 분	내 용		
최고금리	연 3.3%	기본이율(연 1.8%) + 우대이율(연 1.5%) - 가입기간 2년 이상으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 가입기간 최대 10년 내에서 무주택기간까지 - 상세 우대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확인 - '21. 04. 23 현재, 세금납부 이전 기준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가입대상	▶ 만 19세~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② 본인이 무주택인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이상) 예정자 ③ 본인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원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 까지만 납입 가능		
최저가입금액	2만원	최고가입금액	매월 50만원 이하 - 단, 잔액이 1,500만원이 될 때 까지는 1회차로 입금 가능
일부해지	X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예금담보대출	O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 가능	
예금자보호	X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99-1111,0,6)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도 중도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이자계산방법	입금 건별로 해당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해지 시 지급 ※ 가입기간 1년, 3회차 납부 후 해지 예시 1회차 $\text{입금금액} \times \text{약정이율} / 12 \times 12$ 2회차 $\text{입금금액} \times \text{약정이율} / 11 \times 12$ 3회차 $\text{입금금액} \times \text{약정이율} / 10 \times 12$
계약의 해지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지만 가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상품특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민영 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 이율(1.5%)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2])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한 시 · 군
85 ㎡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 ㎡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 ㎡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자격 및 제출서류	▶ 가입자격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 세 이상 만 34 세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 조제 1 항제 1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 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 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로서 거주자 중

2. ①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를 3 개월이상 연속하여 유지)
- ②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세대주를 3 개월이상 연속하여 유지) 가 될 예정인 자
- ③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인 자(※주택의 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 조 해석례(별첨)에 따른다)이며,
3.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중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①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의 총 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 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 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 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3 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 ②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적용)의 종합소득금액이 3 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 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 가입 시 제출서류

1. 소득입증서류

구분	공통	
기본 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 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 소득자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등
사업 소득자	-	
기타 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가입연도 1~6 월까지 전전년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급여명세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한다. ③ 저축 가입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④ 근로소득이 직전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 ÷ 소득발생 개월 수) × 12로 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한다. ⑤ 상품가입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2. 병역인정서류(병역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 함) : 병적증명서 3.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증서류 ①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유지)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본) 가입 시 제출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유지) 가 될 예정인 자 : 주민등록등본(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 해지 전까지 제출 ③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 가입자가 속한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단위, 최근 과세기간까지, 최근 3개월 내 발급본) 4. ‘각서(별첨양식)’ - 영업점비치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방문만 가능 ▶ 해지 : 영업점 방문만 가능
가입제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조건(연령, 연소득, 무주택인 세대주)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 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신규(이하 ‘전환신규’이라고 함)을 신청하여야 가입이 가능함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1.12.31.까지만 가입이 가능함
상품유형	적립식 예금
저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 만원 이하인 경우 50 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적용이자율	▶ 이율 표 (2021. 04. 23 현재, 세전, 연, 단리식) <table><tr><th>가입기간</th><th>기존 이자율</th><th>우대이자율 (일반 해지는 가입 2년 이상 해지 시에 적용)</th><th>청년 우대형 합산 이자율</th></tr><tr><td>1 개월 이내</td><td>무이자</td><td>-</td><td>무이자</td></tr><tr><td>1 개월 초과 1 년 미만</td><td>연 1.0%</td><td rowspan="3">+연 1.5%</td><td>연 2.5%</td></tr><tr><td>1 년 이상 2 년 미만</td><td>연 1.5%</td><td>연 3.0%</td></tr><tr><td>2 년 이상 10 년 이내</td><td>연 1.8%</td><td>연 3.3%</td></tr><tr><td>10 년 초과</td><td>연 1.8%</td><td>-</td><td>연 1.8%</td></tr></table> ※ 변동금리로서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 ※ 우대이자율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는 주택소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입기간	기존 이자율	우대이자율 (일반 해지는 가입 2년 이상 해지 시에 적용)	청년 우대형 합산 이자율	1 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 개월 초과 1 년 미만	연 1.0%	+연 1.5%	연 2.5%	1 년 이상 2 년 미만	연 1.5%	연 3.0%	2 년 이상 10 년 이내	연 1.8%	연 3.3%	10 년 초과	연 1.8%	-	연 1.8%
	가입기간	기존 이자율	우대이자율 (일반 해지는 가입 2년 이상 해지 시에 적용)	청년 우대형 합산 이자율																			
	1 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 개월 초과 1 년 미만	연 1.0%	+연 1.5%	연 2.5%																			
	1 년 이상 2 년 미만	연 1.5%		연 3.0%																			
	2 년 이상 10 년 이내	연 1.8%		연 3.3%																			
	10 년 초과	연 1.8%	-	연 1.8%																			
	▶ 우대이자율 한도 및 적용기간 납입원금 5,000 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우대이자율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자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함.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년도 말일 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우대이자율 적용기간 입증서류 해지 시 우대이자율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저축 해지 시 제출하여야 함.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 해지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주민센터 발급 본 - (과세기간) 가입일~해지일 : 해지 일이 속한 년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 년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이 경우 직전년도까지 표시) - (과세지역) 전국 -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 및 과세연도 있어야 함 ② 제 1항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③ 제 1 항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 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 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해당 시 해지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입일로부터 3 년 이내에 3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⑤ 가입자가 사망하여 해지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해지 신청인(상속인) 기준으로 위에 명시된 해지 시 우대이율을 적용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① 전환신규된 원금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우대이율 미적용)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 조(‘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 이에 대한 해석은 별첨 해석례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가 통장 해지 전 직접 입증하여야 함 ③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임에도 해지 신청 시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동의서(별첨 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중도해지 이자율	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율(위의 적용 이자율 항목 참조)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함
만기 후 이자율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해당사항 없음
이자 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단리식
일부 해지	일부 해지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 불가, 예금담보대출은 계좌 잔액의 95% 까지 가능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제 129 조의 2, 제 14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 제 123 조의 2, 제 137 조의 2 의 내용에 따릅니다.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을 따르며 무주택 해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한도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 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 만원을 한도로 함.

▶ 비과세 요건(대상자)

①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주 1) 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 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함)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 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 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함)

주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세대를 말함.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포함)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봄.

②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제 6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제 6 항에 의한 특별해지사유(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및 해지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라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제 58 호의 3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비과세 신청 시 제출 서류

아래 서류는 가입 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가입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 후

2년 이내 (해지 전) 제출하여야 함

-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제 58 호의 7 ‘무주택 확인서’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제 60 호의 22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③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첨부양식)’
- 본인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해당 시)가 작성
- ④ 가입일 현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 개월 내 발급 본)’
- ⑤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비과세 적격여부 검증 및 소명방법

- ① 저축취급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 제 20 항 등에 의하여 정부에서 통보받은 비과세 부적격자에게 부적격 여부 및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제 9 항에 의해 국세청장이 통보한 부적격 내용(직전년도 소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 60 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에 의해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 10 항제 2 호 등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저축 해지 전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요건(무주택 세대주)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첨부양식)’ 에 의해 저축취급기관에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소명하여야 함.
-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1 조제 21 항에 의해 저축 해지 신청자가 비과세 적격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며, 해지 후 1 개월 내에 동법 시행규칙 서식 58 호의 8 “환급신청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비과세 적격자로 확인되는 경우 세액을 환급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별도 가입은 불가능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 조의 2 에 의해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한 자

소득공제	▶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¹⁾의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 월말²⁾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①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② (예) 2017 년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18 년 2 월 28 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서류: 무주택확인서(은행양식)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에서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 등록 가능 ▶ 공제한도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 만원한도)의 40%공제 (최대 96 만원) ▶ 전환신규를 위한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제 2 항단서(청약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납입분 공제제외) 및 제 87 조제 6 항제 1 호(5 년 내 해지 시 소득공제액 추징)는 전환신규를 위한 기존통장 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추징대상 가입(전환)일로부터 5 년 이내 해지시 (예외사항 : 사망,해외이주,85 ㎡이하 당첨해지 등) 또는, 국민주택규모(85 ㎡)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분(기간 제한 없음) ▶ 추징세율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 만원 한도)의 누계액 x 6% (지방소득세 포함 6.6%) ▶ 유의사항 ①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무주택확인 해지 (소득공제 대상 해지)신청하여야 함 ②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2.12.31 납입분 까지임(관련 법령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전환신규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 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약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환 신규하는 경우 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납입횟수 및 금액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며(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납입금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 ②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의 납입금액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전액 인정 ③ 전환 신규하는 경우 약정납입일은 전환일로 변경 ▶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계좌부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어 해지한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부활 가능 ① 사업주체의 파산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 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 ②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 ③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해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	
부가혜택	일정기간 경과 후 주택청약권 부여	
계약의 해지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해지 불가)	
예금 해지시 불이익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 해지할 경우 주택청약권이 상실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이용제한 사항	이 상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인용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사항 없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함
금융소비자보호법	해당사항 없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외 상품임

3. 유의 사항

▶ 입금 관련 유의사항

- ①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② 전환신규한 경우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③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 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선납한 금액은 해당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
- ④ 만 19 세 이전 입금분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 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 회차까지만 인정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입인정금액을 인정하되 최대 2 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①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 ②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10 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 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 ③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 개월이 경과하고 24 회를 납입하고 인정, 위촉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 개월이 경과하고 1 회를 납입하고 인정, 수도권은 가입 후 12 개월이 경과하고 12 회를 납입하고 인정(24 개월/24 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 개월이 경과하고 6 회를 납입하고 인정(12 개월/12 회까지 연장 가능)되어야 1 순위 자격이 발생되며, 납입인정회차(또는 납입인정금액)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차별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④ 민영주택의 청약 1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위촉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6 개월(12 개월까지 연장 가능)이 경과하고, 잔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 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별도 면적선택 필요없음)
- ⑥ 전환신규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①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② 상계에 따른 계좌 해지 시에는 상계 통지 발송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영업점에 방문하여 우대이율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미입증 시에는 이 저축의 이자율이 아닌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③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에 따른 계좌 해지 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④ 해당 예금의 일부 인출 또는 일부 해지는 불가하며, 본인명의 대출에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⑤ 타 금융기관 또는 제 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 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보증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⑦ 비과세 및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 조, 제 129 조의 2, 제 14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 제 123 조의 2, 제 137 조의 2 내용에 따릅니다.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99-1111,0,6)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무주택 해석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석례

1. 규칙 제 53 조 제 1 호, 제 3 호, 제 6 호, 제 7 호, 제 9 호, 제 10 호는 해석례에 따르고 제 2 호, 제 4 호, 제 5 호, 제 8 호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2. 규칙 제 53 조 중 분양권 등(규칙 제 2 조제 7 의 2 호에서 규정)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 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 46 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 2 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 6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11.24., 2018.12.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 52 조제 3 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해석)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 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 52 조제 3 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해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 호 또는 2 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석)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974 호](2019.1.2.개정)의 제 2 조 제 2 항 제 1 호 나목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의 경우 등호 적용 배제(주택소유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 52 조제 3 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해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을 완료한 경우, 2)주택이 멸실된 경우, 3)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정리를 완료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 7696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 8 조 및 제 9 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 · 저가주택등을 1 호 또는 1 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28 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석) 소형 · 저가주택등을 1 호 또는 1 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10. 제 27 조제 5 항 및 제 28 조제 10 항제 1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해석) 분양권등의 소유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5. 각서

각 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1. 자격 확인

본인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청자로서 가입일 현재 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자격 입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것임을 약합니다.

- 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여야 함)
- 나.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여야 함)될 예정인 자로서, 해지 전까지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 동 사실을 입증할 것
- 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② 연 3천만원 이하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이 있음을 약하며, 위 약 내용 이 사실이 아닌 경우 동 저축 해지 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 대상에서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유의사항

- ① 동 저축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가입일로부터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직전년도까지만 적용됩니다.
- ②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하는 경우 전환원금에는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가입일(전환계좌인 경우 전환신규일)로부터 청약당첨 외의 사유로 2년 미만 해지 시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 동 저축이 상속인에게 명의 변경되는 경우 통장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조건 은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⑤ 동 저축에 대해 상계 통지가 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계통지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가입자가 직접 내방하여 자격요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⑥ 비과세 대상, 요건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따릅니다(우대이율 요건과 달라질 수 있음).

20 . . .

예금주(본인):

(인)

위 내용을 약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본인의 _____(가족관계 기재)인 _____(성명 기재)을 통해 제출합니다.

예금주(본인): _____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리(수임)인: _____ (인)

[첨부]1. ①의 가. 해당 시: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최근 3개월 내의 것)

1. ①의 다. 해당 시: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최근 3개월 내의 것),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 목별 과세증명서(최근 과세기간)

6. 동의서

동 의 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및 비과세대상 제외 동의서)

본인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우대금리 및 비과세를 받기 위한 제반 서류(무주택 기간 및 세대주 유지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제출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금리 및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전체 가입기간에 대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만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20 . . .

예금주(본인):

(인)

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예금주(본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리(수임)인: (인)

7.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청시 본인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정보제공동의서)

본인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청자로서
가입일 현재

□ 주민등록 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그에 속한 별도 세대 포함)가 없음을
확약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
음을 입증하기 위해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인용)을 첨부하
여 아래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 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그에 속한 별도세대 포함)가 있으
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인용)

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표시된 것,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 것)

다. 본인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아래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하나은행 귀중

귀 행과의 수신업무(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4

조제1항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10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자 입증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가입자와 그 배우자,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한다)이며,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의 세대주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및 가입자의 세대분리된 배우자(해당 시)의 성명 및 고유식별정보 ■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소유 및 현황정보 ■ 가입자 및 그의 세대분리된 배우자(해당 시)의 세대원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 는 금융거래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수집·이용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행이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행이 이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가입자 및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의 무주택 확인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및 가입자의 세대분리된 배우자 (해당 시)의 성명 및 고유식별정보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 는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 본인의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 예금 주 (본인): (서명 또는 인)
- 예금주의 배우자 (분리세대 해당 시)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제출 시]

위 내용을 파악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본인의 (가족관계 기재)인 (성명 기재)을
통해 제출합니다.

대리(수임)인: (서명 또는 인)